

투자설명서 변경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변경 대상 펀드

NO	펀드명칭
1	템플턴 이스턴 유럽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템플턴 차이나 드래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3	프랭클린템플턴 MENA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4	프랭클린템플턴 MENA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5	프랭클린 내츨리 리소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6	프랭클린템플턴 미국 바이오 헬스케어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7	프랭클린 미국 인컴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8	프랭클린 미국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9	프랭클린템플턴 월지급 미국 인컴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10	프랭클린템플턴 월지급 미국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11	프랭클린 인디아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12	프랭클린 인컴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
13	프랭클린 친디아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14	프랭클린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 1호

2. 변경 사항

템플턴 이스턴 유럽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문서전반	(추가)	<u>Class S: A0877</u>	CLASS S 신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기업공시 서식 작성 기준 반영
	(추가)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CLASS S 신설
제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014년 2월 21일: <u>CLASS S 신설</u>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정보 갱신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u>(추가)</u>	나. 종류형 구조 <u>Class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u>	CLASS S 신설
제2부. 11.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u>(추가)</u>	(2) 종류별 가입자격 <u>Class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u>	
제2부. 11. 나. (4) 환매수수료	[CLASS A 수익증권] 1. 30일 미만 : 이익금의 10% 2. 30일 이상 : 없음 [CLASS A 수익증권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 1.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2. 90일 이상 : 없음	[CLASS A, <u>CLASS S</u> 수익증권] 1. 30일 미만 : 이익금의 10% 2. 30일 이상 : 없음 [CLASS A, <u>CLASS S</u> 수익증권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 1.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2. 90일 이상 : 없음	
제2부. 13.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정정 <u>전</u> 1) 참조	정정 <u>후</u> 1) 참조	
제2부. 13.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자본시장법 반영
	<u>(추가)</u>	<u>Class S 판매회사 보수: 0.25%</u>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u>금융비용 및</u>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u>발행분담금</u>)	

	수 있습니다.	<u>총액 중 회계기간 초일부터 2013.8.28. 까지의 부분은 펀드가 부담하고, 2013.8.29. 이후 분은 자산운용사가 부담)</u>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u>2013년 12월 31일까지</u>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u>2014년 12월 31일까지</u>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손익상계 연장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 실적 등에 관한 사항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정보 갱신
제4부. 1. 라. 운용자산 규모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u>나이스채권평가</u> www.nicepricing.co.kr	<u>NICE P&I</u> www.nicepni.com	채권평가회사 사명 변경 반영
제 5 부. 1. 가. (2) ② 의결권 행사방법	<u>-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 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u>	<u>-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 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u>	개정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반영

	<p>-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u>(추가)</u></p>	<p><u>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u></p> <p>-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u>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 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u> <u>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u> <u>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u> <u>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 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따를 것</u> 	
--	---	--	--

<p>제 5 부. 1. 가. (2) ③ 연기수익자총회</p>	<p>- <u>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u>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p> <p>-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u>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u>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p>	<p>- <u>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u>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p> <p>-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u>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u>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u>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u>의 수로 결의합니다.</p>	<p>개정 자본시장법 반영</p>
<p>제 5 부. 1. 가. (3) 투 자총회 결의사항</p>	<p>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u>(추가)</u></p>	<p>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p> <p>① <u>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u></p> <p>② <u>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u></p> <p>③ <u>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u></p> <p>④ <u>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p> <p>⑤ <u>투자신탁의 합병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제외)</u></p>	<p>자본시장법 규정 반영</p>
<p>제 5 부. 1. 가. (4) 반</p>	<p><u>법 제188조제2항각호외의 부분 후</u></p>	<p>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p>	<p>개정 자본시장</p>

<p>대매수청구권</p>	<p><u>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u>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p>	<p>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p> <p>①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p> <p>②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p>	<p>법 반영</p>
<p>제5부. 1. 라. 손해배상 책임</p>	<p>해당 증권의 <u>인수계약을 체결한 자</u>,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u>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u></p>	<p>해당 증권의 <u>인수인 또는 주선인</u>,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u>매출인</u></p>	<p>개정 자본시장법 반영</p>
<p>제 5 부. 3. 가.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p>	<p>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u>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기재된 서류</u></p>	<p>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u>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u></p>	<p>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반영</p>
<p>제 5 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p>	<p>①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u>으로 표시한 경우</p>	<p>①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u>으로 표시한 경우</p>	<p>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반영</p>
<p>제 5 부. 3. 나.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p>	<p>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u>추가</u>)</p>	<p>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u>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u></p>	<p>자본시장법 시행령 변경 반영</p>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영
제 5 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개정 자본시장법 반영

정정 전 1)

구 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Class A 수익증권 : 1.00% 이내	매입시
환매수수료	[CLASS A 수익증권] 1. 30일 미만 : 이익금의 10% 2. 30일 이상 : 없음 [CLASS A 수익증권을 제외한 다른 수익증권] 1.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2. 90일 이상 : 없음	환매시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해당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해당 범위 내에서 **선취**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합니다.

정정 후 1)

구 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Class A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00% 이내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Class S 수익증권 : 3년 미만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환매시
환매수수료	[CLASS A, CLASS S 수익증권] 1. 30일 미만 : 이익금의 10% 2. 30일 이상 : 없음 [CLASS A, CLASS S 수익증권을 제외한 다른 수익증권]	

	1.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2. 90일 이상 : 없음	

주1) 선취판매수수료 및 후취판매수수료는 해당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해당 범위 내에서 판매수수료를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합니다.

템플턴 차이나 드래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문서전반	(추가)	Class S: AO894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추가)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CLASS S 신설
제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014년 2월 21일: CLASS S 신설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정보 갱신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추가)	나. 종류형 구조 Class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CLASS S 신설 & 모자형 구조도 업데이트
	다. 모자형 구조	다. 모자형 구조 *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11.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추가)	(2) 종류별 가입자격 Class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CLASS S 신설
제2부. 11. 나. (4) 환매수수료	[CLASS A, CLASS A-e 수익증권] 1. 30일 미만 : 이익금의 10%	[CLASS A, CLASS A-e, CLASS S 수익증권] 1. 30일 미만 : 이익금의	

	<p>2. 30일 이상 : 없음</p> <p>[CLASS A, CLASS A-e 수익증권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p> <p>1.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p> <p>2. 90일 이상 : 없음</p>	<p>10%</p> <p>2. 30일 이상 : 없음</p> <p>[CLASS A, CLASS A-e, CLASS S 수익증권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p> <p>1.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p> <p>2. 90일 이상 : 없음</p>	
제2부. 13.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정정 전 1) 참조	정정 후 1) 참조	
제2부. 13.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p> <p>*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i>(추가)</i>	Class S <u>판매회사 보수: 0.25%</u>	
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p>중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p>	<p>중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p>	손익상계 연장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정보 갱신
제4부. 1. 라. 운용자산 규모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나이스채권평가 www.nicepricing.co.kr	NICE P&I www.nicepni.com	채권평가회사 사명 변경 반영
제 5 부. 1. 가. (2) ② 의결권 행사방법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3. (생략)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 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약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3. (생략)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 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따를 것	개정 자본시장 법 시행령 반영

정정 전 1)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A	일반 투자자용: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납입금액의 1.0% 이내	30일 미만시, 이익금의 10%
A-e	판매회사 인터넷 뱅킹: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납입금액의 0.6% 이내	
C-I	최초납입금액 50억원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	없음	90일 미만시, 이익금의 70%
C-F	1. 기관투자자/기금 2. 최초납입금액 100억원 이상: 개인 3. 최초납입금액 500억원 이상: 법인 4. 집합투자기구, 변액보험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해당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해당 범위 내에서 선취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합니다.

주2) CLASS A-e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 비율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상기 범위를 적용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납입금액의 0.5% 이내로 인하됩니다.

정정 후 1)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A	일반 투자자용: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납입금액의		30일 미만시, 이익

		1.0% 이내	없음	금의 10%
A-e	판매회사 인터넷 뱅킹: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u>납입금액의 0.5% 이내</u>		
C-I	최초납입금액 50억원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	없음		90일 미만시, 이익금의 70%
C-F	1. 기관투자자/기금 2. 최초납입금액 100억원 이상: 개인 3. 최초납입금액 500억원 이상: 법인 4. 집합투자기구, 변액보험			
S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 후취판매수수료 부과</u>		<u>3년 미만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u>	<u>30일 미만시, 이익금의 10%</u>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주1) 선취판매수수료 및 후취판매수수료는 해당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해당 범위 내에서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합니다.

(삭제)

프랭클린템플턴 MENA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문서전반	<u>프랭클린템플턴 MENA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u> (추가)	<u>프랭클린 MENA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u> Class S: A0868	펀드 명칭 변경 & CLASS S 신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추가)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CLASS S 신설
제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014년 2월 21일: CLASS S 신설 및 펀드명칭 변경 : <u>프랭클린템플턴 MENA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 프랭클린 MENA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u>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정보 갱신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추가)	나. 종류형 구조 Class S: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u>	CLASS S 신설

		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제2부. 11.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u>(추가)</u>	(2) 종류별 가입자격 <u>Class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u>	
제2부. 11. 나. (4) 환매수수료	[CLASS A 수익증권] 1. 30일 미만 : 이익금의 10% 2. 30일 이상 : 없음 [CLASS A 수익증권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 1.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2. 90일 이상 : 없음	[CLASS A, <u>CLASS S</u> 수익증권] 1. 30일 미만 : 이익금의 10% 2. 30일 이상 : 없음 [CLASS A, <u>CLASS S</u> 수익증권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 1.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2. 90일 이상 : 없음	
제2부. 13.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정정 <u>전</u> 1) 참조	정정 <u>후</u> 1) 참조	
제2부. 13.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추가)</u>	<u>Class S</u> <u>판매회사 보수: 0.25%</u>	
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u>2013년 12월 31일까지</u>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u>2014년 12월 31일까지</u>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	손익상계 연장

	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 실적 등에 관한 사항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정보 갱신
제4부. 1. 라. 운용자산 규모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u>나이스채권평가</u> www.nicepricing.co.kr	<u>NICE P&I</u> www.nicepni.com	채권평가회사 사명 변경 반영
제 5 부. 1. 가. (2) ② 의결권 행사방법	<u>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u> 2, 3. (생략) <u>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u>	<u>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 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u> 2, 3. (생략) <u>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 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따를 것</u>	개정 자본시장 법 시행령 반영

정정 전 1)

구 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Class A 수익증권 : 1.00% 이내	매입시
환매수수료	[CLASS A 수익증권] 1. 30일 미만 : 이익금의 10% 2. 30일 이상 : 없음 [CLASS A 수익증권을 제외한 다른 수익증권]	환매시

	1.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2. 90일 이상 : 없음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해당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해당 범위 내에서 **선취**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합니다.

정정 후 1)

구 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Class A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00% 이내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Class S 수익증권 : 3년 미만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환매시
환매수수료	<p>[CLASS A, CLASS S 수익증권]</p> <p>1. 30일 미만 : 이익금의 10%</p> <p>2. 30일 이상 : 없음</p> <p>[CLASS A, CLASS S 수익증권을 제외한 다른 수익증권]</p> <p>1.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p> <p>2. 90일 이상 : 없음</p>	

주1) 선취판매수수료 **및 후취판매수수료**는 해당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해당 범위 내에서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합니다.

프랭클린템플턴 MENA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문서전반	<u>프랭클린템플턴 MENA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u> <u>(추가)</u>	<u>프랭클린 MENA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u> <u>Class S: AO869</u>	펀드 명칭 변경 & CLASS S 신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기업공시 서식 작성 기준 반영
	<u>(추가)</u>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제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u>(추가)</u>	2014년 2월 21일: CLASS S 신설 및 펀드명칭 변경 : 프랭클린템플턴 MENA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프랭클린 MENA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CLASS S 신설
제2부. 5. 운용전문인력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정보 갱신

에 관한 사항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u>(추가)</u>	나. 종류형 구조 <u>Class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u>	
제2부. 11.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u>(추가)</u>	(2) 종류별 가입자격 <u>Class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u>	
제2부. 11. 나. (4) 환매수수료	[CLASS A 수익증권] 1. 30일 미만 : 이익금의 10% 2. 30일 이상 : 없음 [CLASS A 수익증권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 1.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2. 90일 이상 : 없음	[CLASS A, <u>CLASS S</u> 수익증권] 1. 30일 미만 : 이익금의 10% 2. 30일 이상 : 없음 [CLASS A, <u>CLASS S</u> 수익증권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 1.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2. 90일 이상 : 없음	CLASS S 신설
제2부. 13.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정정 <u>전</u> 1) 참조	정정 <u>후</u> 1) 참조	
제2부. 13.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자본시장법 반영
	<u>(추가)</u>	<u>Class S</u> <u>판매회사 보수: 0.25%</u>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u>금융비용 및</u>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u>발행분담금 총액 중 회계기간 초일부터</u>	

		<u>2013.8.28. 까지의 부분은 펀드가 부담하고, 2013.8.29. 이후 분은 자산운용사가 부담)</u>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u>2013년 12월 31일까지</u>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u>2014년 12월 31일까지</u>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손익상계 연장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 실적 등에 관한 사항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정보 갱신
제4부. 1. 라. 운용자산 규모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u>나이스채권평가</u> www.nicepricing.co.kr	<u>NICE P&I</u> www.nicepni.com	채권평가회사 사명 변경 반영
제 5 부. 1. 가. (2) ② 의결권 행사방법	<u>-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u>	<u>-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 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u>	개정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반영

	<p>-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u>(추가)</u></p>	<p><u>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u></p> <p>-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u>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 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u> <u>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u> <u>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u> <u>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 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따를 것</u> 	
제 5 부. 1. 가. (2) ③	- 집합투자업자는 <u>수익자총회의 회</u>	- 집합투자업자는 <u>수익자총회의</u>	개정 자본시장

연기수익자총회	<p><u>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u> 경우 연기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p> <p>-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u>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연기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u></p>	<p><u>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u> 경우 연기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p> <p>-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u>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연기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연기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u></p>	법 반영
제 5 부. 1. 가.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p>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p> <p><u>(추가)</u></p>	<p>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p> <p>① <u>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u></p> <p>② <u>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u></p> <p>③ <u>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u></p> <p>④ <u>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p> <p>⑤ <u>투자신탁의 합병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제외)</u></p>	자본시장법 규정 반영
제 5 부. 1. 가. (4) 반	<p><u>법 제188조제2항각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u></p>	<p>투자신탁의 수익자는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u></p>	개정 자본시장

<p>대매수청구권</p>	<p><u>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u></p>	<p>사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p> <p>①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p> <p>②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p>	<p>법 반영</p>
<p>제5부. 1. 라. 손해배상 책임</p>	<p>해당 증권의 <u>인수계약을 체결한 자</u>,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u>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u></p>	<p>해당 증권의 <u>인수인 또는 주선인</u>,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u>매출인</u></p>	<p>개정 자본시장법 반영</p>
<p>제 5 부. 3. 가.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p>	<p>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u>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기재된 서류</u></p>	<p>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u>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u></p>	<p>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반영</p>
<p>제 5 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p>	<p>①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u>으로 표시한 경우</p>	<p>①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u>으로 표시한 경우</p>	<p>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반영</p>
<p>제 5 부. 3. 나.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p>	<p>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u>추가</u>)</p>	<p>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u>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u>)</p>	<p>자본시장법 시행령 변경 반영</p>

		는 제외)	
제 5 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개정 자본시장법 반영

정정 전 1)

구 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Class A 수익증권 : 1.00% 이내	매입시
환매수수료	[CLASS A 수익증권] 1. 30일 미만 : 이익금의 10% 2. 30일 이상 : 없음	환매시
	[CLASS A 수익증권을 제외한 다른 수익증권] 1.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2. 90일 이상 : 없음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해당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해당 범위 내에서 **선취**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합니다.

정정 후 1)

구 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Class A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00% 이내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Class S 수익증권 : 3년 미만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환매시
환매수수료	[CLASS A, CLASS S 수익증권] 1. 30일 미만 : 이익금의 10% 2. 30일 이상 : 없음 [CLASS A, CLASS S 수익증권을 제외한 다른 수익증권] 1.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2. 90일 이상 : 없음	

주1) 선취판매수수료 및 후취판매수수료는 해당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해당 범위 내에서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합니다.

프랭클린 내츨럴 리소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문서전반	(추가)	Class S: A0870	CLASS S 신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추가)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CLASS S 신설
제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014년 2월 21일: CLASS S 신설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정보 갱신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추가)	나. 종류형 구조 Class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 (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CLASS S 신설
제2부. 11.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추가)	(2) 종류별 가입자격 Class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 (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CLASS S 신설
제2부. 11. 나. (4) 환매수수료	[CLASS A 수익증권] 1. 30일 미만 : 이익금의 10% 2. 30일 이상 : 없음 [CLASS A 수익증권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 1. 90일 미만 : 이익금의	[CLASS A, CLASS S 수익증권] 1. 30일 미만 : 이익금의 10% 2. 30일 이상 : 없음 [CLASS A, CLASS S 수익증권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 1. 90일 미만 : 이익금의	CLASS S 신설

	70% 2. 90일 이상 : 없음	70% 2. 90일 이상 : 없음	
제2부. 13.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정정 전 1) 참조	정정 후 1) 참조	
제2부. 13.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u>Class S</u> <u>판매회사 보수: 0.25%</u>	
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제2항에 의하여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제2항에 의하여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손익상계 연장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정보 갱신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정정 전 1)

구 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Class A 수익증권 : 1.00% 이내	매입시
환매수수료	[CLASS A 수익증권] 1. 30일 미만 : 이익금의 10% 2. 30일 이상 : 없음	환매시
	[CLASS A 수익증권을 제외한 다른 수익증권] 1.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2. 90일 이상 : 없음	
--	----------------	--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해당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해당 범위 내에서 **선취**판매수수료를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합니다.

정정 후 1)

구 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Class A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00% 이내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Class S 수익증권 : 3년 미만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환매시
환매수수료	<p>[CLASS A, CLASS S 수익증권]</p> <p>1. 30일 미만 : 이익금의 10%</p> <p>2. 30일 이상 : 없음</p> <p>[CLASS A, CLASS S 수익증권을 제외한 다른 수익증권]</p> <p>1.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p> <p>2. 90일 이상 : 없음</p>	

주1) 선취판매수수료 및 **후취판매수수료**는 해당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해당 범위 내에서 판매수수료를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합니다.

프랭클린템플턴 미국 바이오 헬스케어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문서전반	<u>프랭클린템플턴 미국 바이오 헬스케어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u> (추가)	<u>프랭클린 미국 바이오 헬스케어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u> Class C-P: AP014 Class S: AO903 Class S-P: AP012	펀드 명칭 변경 & CLASS C-P, CLASS S, CLASS S-P 신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개정 기업공시 서식 작성 기준 반영
제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014년 2월 21일: <u>CLASS C-P, CLASS S, CLASS S-P</u> 신설 및 펀드명칭 변경 : <u>프랭클린템플턴 미국 바이오 헬스케어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u> □ <u>프랭클린 미국 바이오 헬스케어 증</u>	CLASS C-P, CLASS S, CLASS S-P 신설

		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정보 갱신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u>(추가)</u>	<p>나. 종류형 구조</p> <p><u>Class 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u></p> <p><u>Class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u></p> <p><u>Class 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u></p>	CLASS C-P, CLASS S, CLASS S-P 신설
제2부. 11.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u>(추가)</u>	<p>(2) 종류별 가입자격</p> <p><u>Class 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u></p> <p><u>Class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u></p> <p><u>Class 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u></p>	

		<p>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 (경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p>	
제2부. 11. 나. (4) 환매수수료	<p>[CLASS A, CLASS A-e 수익증권]</p> <p>1. 30일 미만 : 이익금의 10%</p> <p>2. 30일 이상 : 없음</p> <p>[CLASS A, CLASS A-e 수익증권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p> <p>1.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p> <p>2. 90일 이상 : 없음</p>	<p>[CLASS A, CLASS A-e, <u>CLASS S</u> 수익증권]</p> <p>1. 30일 미만 : 이익금의 10%</p> <p>2. 30일 이상 : 없음</p> <p>[CLASS A, CLASS A-e, <u>CLASS S, CLASS C-P, CLASS S-P</u> 수익증권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p> <p>1.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p> <p>2. 90일 이상 : 없음</p> <p>[<u>CLASS C-P, CLASS S-P</u> 수익증권]</p> <p>환매수수료 없음</p>	
제2부. 13.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정정 <u>전</u> 1) 참조	정정 <u>후</u> 1) 참조	
제2부. 13. 나. 집합투자 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p> <p>*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추가)	<p><u>Class C-P</u> 판매회사 보수: 0.80%</p> <p><u>Class S</u> 판매회사 보수: 0.25%</p> <p><u>Class S-P:</u> 판매회사 보수: 0.20%</p>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u>금융비용 및</u> 증권신고서 제	개정 자본시장법 반영

	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에 따른 발행분담금(<u>발행분담금 총액 중 회계기간 초일부터 2013.8.28. 까지의 부분은 펀드가 부담하고, 2013.8.29. 이후 분은 자산운용사가 부담</u>)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 실적 등에 관한 사항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정보 갱신
제4부. 1. 라. 운용자산 규모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u>나이스채권평가</u> www.nicepricing.co.kr	<u>NICE P&I</u> www.nicepni.com	채권평가회사 사명 변경 반영
제 5 부. 1. 가. (2) ② 의결권 행사방법	<p>- 수익자총회는 <u>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u></p> <p>-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u>(추가)</u></p>	<p>- 수익자총회는 <u>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 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u></p> <p>-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u>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u></p>	개정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반영

		<p>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 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p> <p>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 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p> <p>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p> <p>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p> <p>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 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따를 것</p>	
<p>제 5 부. 1. 가. (2) ③ 연기수익자총회</p>	<p>- 집합투자업자는 <u>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u>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p> <p>-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u>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u>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p>	<p>- 집합투자업자는 <u>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u>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p> <p>-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u>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u>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p>	<p>개정 자본시장 법 반영</p>

	<u>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u>	<u>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u>	
제 5 부. 1. 가.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u>(추가)</u>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① <u>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u> ② <u>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u> ③ <u>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u> ④ <u>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⑤ <u>투자신탁의 합병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제외)</u>	자본시장법 규정 반영
제 5 부. 1. 가. (4) 반대매수청구권	<u>법 제188조제2항각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u>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u>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u>	개정 자본시장법 반영

		<u>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u> <u>②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u>	
제5부. 1. 라. 손해배상 책임	해당 증권의 <u>인수계약을 체결한 자</u> ,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u>그 매출되는 증권</u> 의 <u>소유자</u>	해당 증권의 <u>인수인 또는 주선인</u> ,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u>매출인</u>	개정 자본시장법 반영
제 5 부. 3. 가.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u>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기재된 서류</u>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u>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u>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반영
제 5 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①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u> 으로 표시한 경우	①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u> 으로 표시한 경우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반영
제 5 부. 3. 나.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u>추가</u>)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u>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u>)	자본시장법 시행령 변경 반영
제 5 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u>및 그 사유</u>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u>및 그 사유</u>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 인 사유	개정 자본시장법 반영

	인 사유		
--	------	--	--

정정 전 1)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A	일반 투자자용: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납입금액의 1.0% 이내	30일 미만시, 이익금의 10%
A-e	판매회사 인터넷 뱅킹: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u>납입금액의 0.6% 이내</u>	
C	일반 투자자용: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X	없음	90일 미만시, 이익금의 70%
C-e	판매회사 인터넷 뱅킹: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X		
C-I	최초납입금액 50억원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		
C-F	1. 기관투자자/기금 2. 최초납입금액 100억원 이상: 개인 3. 최초납입금액 500억원 이상: 법인 4. 집합투자기구, 변액보험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해당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해당 범위 내에서 **선취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에 이를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합니다.

주2) CLASS A-e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 비율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상기 범위를 적용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납입금액의 0.5% 이 내로 인하됩니다.

정정 후 1)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A	일반 투자자용: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납입금액의 1.0% 이내		30일 미만시, 이익금의 10%
A-e	판매회사 인터넷 뱅킹: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u>납입금액의 0.5% 이내</u>		
C	일반 투자자용: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X	없음	없음	90일 미만시, 이익금의 70%
C-e	판매회사 인터넷 뱅킹: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X			
C-I	최초납입금액 50억원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			
C-F	1. 기관투자자/기금 2. 최초납입금액 100억원 이상: 개인 3. 최초납입금액 500억원 이상: 법인 4. 집합투자기구, 변액보험			
C-P	<u>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2에 따른 연금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X</u>			없음
S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 후취판매수수료 부과</u>		<u>3년 미만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u>	<u>30일 미만시, 이익금의 10%</u>
S-P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u>		없음	없음

	<u>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 가능, 판매수수료 징구 X</u>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주1) 선취판매수수료 및 후취판매수수료는 해당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해당 범위 내에서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합니다.

(삭제)

프랭클린 미국 인컴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문서전반	(추가)	<u>Class S: AO864</u> <u>Class S-P: AO865</u>	CLASS S, CLASS S-P 신설
	<u>프랭클린템플턴 미국 인컴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u>	<u>프랭클린 미국 인컴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u>	이 펀드가 투자하는 모펀드 명칭 변경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추가)	<u>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u>	CLASS S, CLASS S-P 신설
제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u>2014년 2월 21일:</u> <u>CLASS S, CLASS S-P 신설</u>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정보 갱신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추가)	나. 종류형 구조 <u>Class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u> <u>Class 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u>	CLASS S, CLASS S-P 신설

		<p>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p>
제2부. 11. 가. 매입	<p>(2) 종류별 가입자격 <u>(추가)</u></p>	<p>(2) 종류별 가입자격 <u>Class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u> <u>Class 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u></p>
제2부. 11. 나. (4) 환매수수료	<p>[CLASS A, CLASS A-e 수익증권]</p> <p>1. 30일 미만 : 이익금의 10%</p> <p>2. 30일 이상 : 없음</p> <p>[CLASS A, CLASS A-e, CLASS C-P 수익증권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p> <p>1.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p> <p>2. 90일 이상 : 없음</p> <p>[CLASS C-P 수익증권]</p> <p>환매수수료 없음</p>	<p>[CLASS A, CLASS A-e, <u>CLASS S</u> 수익증권]</p> <p>1. 30일 미만 : 이익금의 10%</p> <p>2. 30일 이상 : 없음</p> <p>[CLASS A, CLASS A-e, <u>CLASS S</u>, CLASS C-P, <u>CLASS S-P</u> 수익증권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p> <p>1.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p> <p>2. 90일 이상 : 없음</p> <p>[CLASS C-P, <u>CLASS S-P</u> 수익증권]</p> <p>환매수수료 없음</p>

제2부. 13.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정정 전 1) 참조	정정 후 1) 참조	
제2부. 13.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Class S 판매회사 보수: 0.25% Class S-P 판매회사 보수: 0.20%	
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제2항에 의하여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제2항에 의하여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손익상계 연장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정보 갱신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정정 전 1)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A	일반 투자자용: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납입금액의 1.0% 이내	30일 미만시, 이익금의 10%
A-e	판매회사 인터넷 banking: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납입금액의 0.6% 이내	
C	일반 투자자용: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X	없음	90일 미만시, 이익금의 70%
C-e	판매회사 인터넷 banking: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X		
C-I	최초납입금액 50억원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		

C-F	1. 기관투자자/기금 2. 최초납입금액 100억원 이상: 개인 3. 최초납입금액 500억원 이상: 법인 4. 집합투자기구, 변액보험		
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X		없음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해당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해당 범위 내에서 **선취**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합니다.

주2) CLASS A-e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 비율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상기 범위를 적용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납입금액의 0.5% 이내로 인하됩니다.

정정 후 1)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A	일반 투자자용: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납입금액의 1.0% 이내	없음	30일 미만시, 이익금의 10%	
A-e	판매회사 인터넷 뱅킹: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납입금액의 0.5% 이내			
C	일반 투자자용: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X	없음		없음	90일 미만시, 이익금의 70%
C-e	판매회사 인터넷 뱅킹: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X				
C-I	최초납입금액 50억원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				
C-F	1. 기관투자자/기금 2. 최초납입금액 100억원 이상: 개인 3. 최초납입금액 500억원 이상: 법인 4. 집합투자기구, 변액보험				
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X	없음	없음	없음	
S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u> : 후취판매수수료 부과		<u>3년 미만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u>	<u>30일 미만시, 이익금의 10%</u>	
S-P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u> :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 가능, 판매수수료		없음	없음	

정구 X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주1) 선취판매수수료 및 후취판매수수료는 해당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해당 범위 내에서 판매수수료를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합니다.

프랭클린 미국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문서전반	<u>(추가)</u>	Class S: AO872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u>(추가)</u>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CLASS S 신설
제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u>(추가)</u>	2014년 2월 14일: CLASS S 신설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정보 갱신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u>(추가)</u>	나. 종류형 구조 Class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CLASS S 신설 & 모자형 구조도 업데이트
	다. 모자형 구조	다. 모자형 구조 *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11.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u>(추가)</u>	(2) 종류별 가입자격 Class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CLASS S 신설
제2부. 11. 나. (4) 환매수수료	[CLASS A 수익증권] 1. 30일 미만 : 이익금의 10%	[CLASS A, CLASS S 수익증권] 1. 30일 미만 : 이익금의 10%	

	2. 30일 이상 : 없음 [CLASS A 수익증권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 1.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2. 90일 이상 : 없음	2. 30일 이상 : 없음 [CLASS A, <u>CLASS S</u> 수익증권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 1.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2. 90일 이상 : 없음	
제2부. 13.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정정 <u>전</u> 1) 참조	정정 <u>후</u> 1) 참조	
제2부. 13.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LASS S 신설 & 정보 갱신
	<u>(추가)</u>	<u>Class S</u> <u>판매회사 보수: 0.25%</u>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u>금융비용 및</u>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u>발행분담금 총액 중 회계기간 초일부터 2013.8.28. 까지의 부분은 펀드가 부담하고, 2013.8.29. 이후</u> <u>분은 자산운용사가 부담</u>)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정 자본시장법 반영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정보 갱신
제4부. 1. 라. 운용자산 규모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u>나이스채권평가</u> <u>www.nicepricing.co.kr</u>	<u>NICE P&I</u> <u>www.nicepni.com</u>	채권평가회사 사명 변경 반영
제 5 부. 1. 가. (2) ② 의결권 행사방법	<u>-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 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u>	<u>-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 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u>	개정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반영

	<p>-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u>(추가)</u></p>	<p><u>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u></p> <p>-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u>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 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u> <u>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u> <u>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u> <u>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 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따를 것</u> 	
--	---	--	--

제 5 부. 1. 가.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u>(추가)</u>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u>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u> <u>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u> <u>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u> <u>④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u>⑤ 투자신탁의 합병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제외)</u>	자본시장법 규정 반영
제5부. 1. 라. 손해배상 책임	해당 증권의 <u>인수계약을 체결한 자</u> ,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u>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u>	해당 증권의 <u>인수인 또는 주선인</u> ,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u>매출인</u>	개정 자본시장법 반영
제 5 부. 3. 나.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u>(추가)</u>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u>(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u>	자본시장법 시행령 변경 반영

정정 전 1)

구 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Class A 수익증권 : 0.5% 이내	매입시
환매수수료	Class A 수익증권 : 30일 미만시, 이익금의 10%	환매시
	그 외 수익증권 : 90일 미만시, 이익금의 70%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해당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해당 범위 내에서 선취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합니다.

정정 후 1)

구 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	----------------	------

선취판매수수료	Class A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0.5% 이내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Class S 수익증권 : 3년 미만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환매시
환매수수료	Class A, Class S 수익증권 : 30일 미만시, 이익금의 10%	
	그 외 수익증권 : 90일 미만시, 이익금의 70%	

주1) 선취판매수수료 및 후취판매수수료는 해당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해당 범위 내에서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합니다.

프랭클린템플턴 월지급 미국 인컴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문서전반	<u>프랭클린템플턴 월지급 미국 인컴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u> (추가)	<u>프랭클린 월지급 미국 인컴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u> <u>Class S: A0866</u>	펀드 명칭 변경 & CLASS S 신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u>간이투자설명서</u> 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기업공시 서식 작성 기준 반영
	<u>9~14.</u>	<u>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u> <u>10~15. (번호 이동)</u>	
제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u>2014년 2월 21일:</u> <u>CLASS S 신설 및 펀드명칭 변경 :</u> <u>프랭클린템플턴 월지급 미국 인컴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프랭클린 월지급 미국 인컴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u>	CLASS S 신설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정보 갱신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추가)	나. 종류형 구조 <u>Class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 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u>	CLASS S 신설
제2부. 11.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2) 종류별 가입자격	

	<u>(추가)</u>	<u>Class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요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u>	
제2부. 11. 나. (4) 환매수수료	<p>[CLASS A, CLASS A-e 수익증권]</p> <p>1. 30일 미만 : 이익금의 10%</p> <p>2. 30일 이상 : 없음</p> <p>[CLASS A, CLASS A-e 수익증권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p> <p>1.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p> <p>2. 90일 이상 : 없음</p>	<p>[CLASS A, CLASS A-e, <u>CLASS S</u> 수익증권]</p> <p>1. 30일 미만 : 이익금의 10%</p> <p>2. 30일 이상 : 없음</p> <p>[CLASS A, CLASS A-e, <u>CLASS S</u> 수익증권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p> <p>1.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p> <p>2. 90일 이상 : 없음</p>	
제2부. 13.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정정 <u>전</u> 1) 참조	정정 <u>후</u> 1) 참조	
제2부. 13.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p> <p>*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u>(추가)</u></p>	<p><u>Class S</u></p> <p><u>판매회사 보수: 0.25%</u></p>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 실적 등에 관한 사항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정보 갱신
제4부. 1. 라. 운용자산 규모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p><u>나이스채권평가</u></p> <p><u>www.nicepricing.co.kr</u></p>	<p><u>NICE P&I</u></p> <p><u>www.nicepni.com</u></p>	채권평가회사 사명 변경 반영
제 5 부. 1. 가. (2)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 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개정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p><u>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u></p> <p>-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u>(추가)</u></p>	<p><u>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u></p> <p>-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u>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 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u> <u>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u> <u>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u> <u>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 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u> 	반영
--	---	--	----

		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따른 것	
제 5 부. 1. 가. (2) ③ 연기수익자총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u>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u>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u>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u>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u> 	개정 자본시장법 반영
제 5 부. 1. 가. (3) 투 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u>(추가)</u>	<p>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u>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u> ② <u>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u> ③ <u>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u> ④ <u>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u> 	자본시장법 규정 반영

		<p><u>정하는 사항</u></p> <p>⑤ <u>투자신탁의 합병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제외)</u></p>	
제 5 부. 1. 가. (4) 반대매수청구권	<p><u>법 제188조제2항각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u></p>	<p><u>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u></p> <p>① <u>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u></p> <p>② <u>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u></p>	개정 자본시장법 반영
제5부. 1. 라. 손해배상 책임	<p>해당 증권의 <u>인수계약을 체결한 자</u>,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u>그 매출되는 증권</u>의 <u>소유자</u></p>	<p>해당 증권의 <u>인수인 또는 주선인</u>,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u>매출인</u></p>	개정 자본시장법 반영
제 5 부. 3. 가.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③ <u>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기재된 서류</u>	③ <u>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u>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반영
제 5 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①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u> 으로 표시한 경우	①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u>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반영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제 5 부. 3. 나.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추가)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u>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u>)	자본시장법 시행령 변경 반영
제 5 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u>및 그 사유</u>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u>및 그 사유</u>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개정 자본시장법 반영

정정 전 1)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A	일반 투자자용: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납입금액의 1.0% 이내	30일 미만시, 이익금의 10%
A-e	판매회사 인터넷 banking: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u>납입금액의 0.6% 이내</u>	
C	일반 투자자용: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X	없음	90일 미만시, 이익금의 70%
C-e	판매회사 인터넷 banking: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X		
C-I	최초납입금액 50억원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		
C-F	1. 기관투자자/기금 2. 최초납입금액 100억원 이상: 개인 3. 최초납입금액 500억원 이상: 법인 4. 집합투자기구, 변액보험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해당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해당 범위 내에서 선취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합니다.

주2) CLASS A-e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 비율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상기 범위를 적용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납입금액의 0.5% 이내로 인하됩니다.

정정 후 1)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A	일반 투자자용: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납입금액의 1.0% 이내	없음	30일 미만시, 이익금의 10%	
A-e	판매회사 인터넷 뱅킹: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u>납입금액의 0.5% 이내</u>			
C	일반 투자자용: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X	없음		없음	90일 미만시, 이익금의 70%
C-e	판매회사 인터넷 뱅킹: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X				
C-I	최초납입금액 50억원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				
C-F	1. 기관투자자/기금 2. 최초납입금액 100억원 이상: 개인 3. 최초납입금액 500억원 이상: 법인 4. 집합투자기구, 변액보험				
S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 후취판매수수료 부과</u>		<u>3년 미만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u>	<u>30일 미만시, 이익금의 10%</u>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주1) 선취판매수수료 및 후취판매수수료는 해당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해당 범위 내에서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합니다.

프랭클린템플턴 월지급 미국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문서전반	<u>프랭클린템플턴 월지급 미국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추가)</u>	<u>프랭클린 월지급 미국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Class S: AO873</u>	펀드 명칭 변경 & CLASS S 신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u>간이투자설명서</u> 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기업공시 서식 작성 기준 반영
	<u>9~12.</u>	<u>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u> <u>10~13 (번호 이동)</u>	
제2부. 2. 집합투자기구	(추가)	<u>2014년 2월 21일:</u>	CLASS S 신설

의 연혁		CLASS S 신설 및 펀드명칭 변경 : 프랭클린템플턴 월지급 미국 하이 일드 증권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 형) → 프랭클린 월지급 미국 하이 일드 증권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 형)	
제2부. 5. 운용전문인력 에 관한 사항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정보 갱신
제2부. 6. 집합투자기구 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u>(추가)</u>	나. 종류형 구조 <u>Class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 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 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 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 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 하고자 하는 투자자</u>	CLASS S 신설 & 모자형 구조 도 업데이트
	다. 모자형 구조	다. 모자형 구조 *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11.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u>(추가)</u>	(2) 종류별 가입자격 <u>Class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 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 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 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 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 하고자 하는 투자자</u>	
제2부. 11. 나. (4) 환매 수수료	[CLASS A 수익증권] 1. 30일 미만 : 이익금의 10% 2. 30일 이상 : 없음 [CLASS A 수익증권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 1.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2. 90일 이상 : 없음	[CLASS A, <u>CLASS S</u> 수익증권] 1. 30일 미만 : 이익금의 10% 2. 30일 이상 : 없음 [CLASS A, <u>CLASS S</u> 수익증권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 1.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2. 90일 이상 : 없음	CLASS S 신설

제2부. 13.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정정 <u>전</u> 1) 참조	정정 <u>후</u> 1) 참조	
제2부. 13.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추가)</u>		
		<u>Class S</u> <u>판매회사 보수: 0.25%</u>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 실적 등에 관한 사항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정보 갱신
제4부. 1. 라. 운용자산 규모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u>나이스채권평가</u> www.nicepricing.co.kr	<u>NICE P&I</u> www.nicepni.com	채권평가회사 사명 변경 반영
제 5 부. 1. 가. (2) ② 의결권 행사방법	<p>-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p> <p>-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u>(추가)</u></p>	<p>-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p> <p>-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u>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u></p>	개정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반영

		<p>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 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p> <p>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 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p> <p>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p> <p>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p> <p>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 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따를 것</p>	
<p>제 5 부. 1. 가. (2) ③ 연기수익자총회</p>	<p>- 집합투자업자는 <u>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u>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p> <p>-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u>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u>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p>	<p>- 집합투자업자는 <u>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u>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p> <p>-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u>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u>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p>	<p>개정 자본시장 법 반영</p>

	<p><u>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u></p>	<p><u>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u></p>	
<p>제 5 부. 1. 가.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p>	<p>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u>(추가)</u></p>	<p>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p> <p>① <u>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u></p> <p>② <u>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u></p> <p>③ <u>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u></p> <p>④ <u>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p> <p>⑤ <u>투자신탁의 합병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제외)</u></p>	<p>자본시장법 규정 반영</p>
<p>제 5 부. 1. 가. (4) 반대매수청구권</p>	<p><u>법 제188조제2항각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u></p>	<p><u>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u></p> <p>① <u>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u></p>	<p>개정 자본시장법 반영</p>

		<u>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u> <u>②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u>	
제5부. 1. 라. 손해배상 책임	해당 증권이 <u>인수계약을 체결한 자</u> ,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u>그 매출되는 증권</u> 의 <u>소유자</u>	해당 증권이 <u>인수인 또는 주선인</u> ,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u>매출인</u>	개정 자본시장법 반영
제 5 부. 3. 가.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u>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기재된 서류</u>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u>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u>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반영
제 5 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①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u> 으로 표시한 경우	①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u> 으로 표시한 경우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반영
제 5 부. 3. 나.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u>추가</u>)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u>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u>)	자본시장법 시행령 변경 반영
제 5 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u>및 그 사유</u>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u>및 그 사유</u>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개정 자본시장법 반영

	인 사유		
--	------	--	--

정정 전 1)

구 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Class A 수익증권 : 1.0% 이내	매입시
환매수수료	Class A 수익증권 : 30일 미만시, 이익금의 10%	환매시
	그 외 수익증권 : 90일 미만시, 이익금의 70%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해당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해당 범위 내에서 선취판매수수료를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합니다.

정정 후 1)

구 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Class A 수익증권 : <u>납입금액의</u> 1.0% 이내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Class S 수익증권 : 3년 미만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환매시
환매수수료	Class A, Class S 수익증권 : 30일 미만시, 이익금의 10%	
		그 외 수익증권 : 90일 미만시, 이익금의 70%

주1) 선취판매수수료 **및 후취판매수수료**는 해당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해당 범위 내에서 판매수수료를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합니다.

프랭클린 인디아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문서전반	(추가)	Class S: AO879	CLASS S 신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u>간이투자설명서</u> 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기업공시 서식 작성 기준 반영
	(추가)	<u>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u>	CLASS S 신설
제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014년 2월 21일: CLASS S 신설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정보 갱신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추가)	나. 종류형 구조 <u>Class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 (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u>	CLASS S 신설 & 모자형 구조도 업데이트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다. 모자형 구조	다. 모자형 구조 *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11.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u>(추가)</u>	(2) 종류별 가입자격 Class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 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CLASS S 신설
제2부. 11. 나. (4) 환매수수료	[CLASS A 수익증권] 1. 30일 미만 : 이익금의 10% 2. 30일 이상 : 없음 [CLASS A 수익증권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 1.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2. 90일 이상 : 없음	[CLASS A, CLASS S 수익증권] 1. 30일 미만 : 이익금의 10% 2. 30일 이상 : 없음 [CLASS A, CLASS S 수익증권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 1.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2. 90일 이상 : 없음	
제2부. 13.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정정 <u>전</u> 1) 참조	정정 <u>후</u> 1) 참조	
제2부. 13.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자본시장법 반영
	<u>(추가)</u>	Class S 판매회사 보수: 0.25%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금융비용 및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발행분담금 총액 중 회계기간 초일부터 2013.8.28. 까지의 부분은 펀드가 부담하고, 2013.8.29. 이후 분은 자산운용사가 부담)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2부. 14. 나. (2) 수익자	중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중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손익상계 연장

<p>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p>	<p>2제2항에 의하여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p>	<p>2제2항에 의하여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p>	
<p>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p>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p>		<p>정보 갱신</p>
<p>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p>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p>		
<p>제 5 부. 1. 가. (2) ② 의 결권 행사방법</p>	<p>- 수익자총회는 <u>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u></p> <p>-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 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p>	<p>- 수익자총회는 <u>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u></p> <p>-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 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p>	<p>개정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반영</p>

		<p>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p> <p>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 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p> <p>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p> <p>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p> <p>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 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따를 것</p>	
<p>제 5 부. 1. 가. (2) ③ 연기수익자총회</p>	<p>- 집합투자업자는 <u>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u>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p> <p>-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u>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u></p>	<p>- 집합투자업자는 <u>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u>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p> <p>-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u>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u></p>	<p>개정 자본시장법 반영</p>

	<p><u>수익증권의 좌수가 발매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u></p>	<p><u>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u></p>	
<p>제 5 부. 1. 가.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p>	<p>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u>(추가)</u></p>	<p>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p> <p>① <u>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u></p> <p>② <u>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u></p> <p>③ <u>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u></p> <p>④ <u>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p> <p>⑤ <u>투자신탁의 합병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제외)</u></p>	<p>자본시장법 규정 반영</p>
<p>제 5 부. 1. 가. (4) 반대매수청구권</p>	<p><u>법 제188조제2항각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u></p>	<p><u>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u></p> <p>① <u>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u></p>	<p>개정 자본시장법 반영</p>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제5부. 1. 라. 손해배상책임	해당 증권의 <u>인수계약을 체결한 자</u> ,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u>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u>	해당 증권의 <u>인수인 또는 주선인</u> ,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u>매출인</u>	개정 자본시장법 반영
제 5 부. 3. 가.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u>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기재된 서류</u>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u>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u>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반영
제 5 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①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u> 으로 표시한 경우	①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u> 으로 표시한 경우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반영
제 5 부. 3. 나.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u>추가</u>)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u>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u>)	자본시장법 시행령 변경 반영
제 5 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u>및 그 사유</u>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해	개정 자본시장법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	--	--

정정 전 1)

구 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Class A 수익증권 : 1.00% 이내	매입시
환매수수료	[CLASS A 수익증권] 1. 30일 미만 : 이익금의 10% 2. 30일 이상 : 없음 [CLASS A 수익증권을 제외한 다른 수익증권] 1.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2. 90일 이상 : 없음	환매시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해당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해당 범위 내에서 **선취**판매수수료를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합니다.

정정 후 1)

구 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Class A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00% 이내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Class S 수익증권 : 3년 미만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CLASS A, CLASS S 수익증권] 1. 30일 미만 : 이익금의 10% 2. 30일 이상 : 없음 [CLASS A, CLASS S 수익증권을 제외한 다른 수익증권] 1.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2. 90일 이상 : 없음	환매시

주1) 선취판매수수료 **및 후취판매수수료**는 해당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해당 범위 내에서 판매수수료를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합니다.

프랭클린 인컴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문서전반	<u>(추가)</u>	<u>Class C: AO912 / Class S: AO913</u>	종류형 펀드로 구조 변경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를 반	개정 기업공시 서식 작성 기

	다.	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 반영
	(추가)	<u>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u>	CLASS S 신설
제1부. 2. 마. 특수형태 및 문서 전반	(추가)	<u>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u>	
제2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특수형태: ㄴ	특수형태: <u>종류형</u>	
제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014년 2월 21일: 종류형 펀드로 구조 변경 * 효력발생일부터 기존 가입자는 프랭클린 인컴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 Class C 수익증권의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종류형 펀드로 구조 변경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정보 갱신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주식혼합) 투자신탁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주식혼합) 투자신탁, <u>종류형</u>	종류형 펀드로 구조 변경
	(추가)	나. <u>종류형 구조</u> 정정 후 1) 참조	
제2부. 11. 가. 매입	(추가)	(2) <u>종류별 가입자격 :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u> *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종류형 펀드로 구조 변경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2)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2부. 13.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정정 전 2) 참조	정정 후 2) 참조	
제2부. 13. 나. 집합투자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종류형 펀드

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 구조 변경 & 정보 갱신
	판매회사 보수: 1.00%	<u>Class C</u> 판매회사 보수: 1.00%	
	(추가)	<u>Class S</u> 판매회사 보수: 0.35%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u>금융비용 및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발행분담금 총액 중 회계기간 초일부터 2013.8.28. 까지의 부분은 펀드가 부담하고, 2013.8.29. 이후 분은 자산운용사가 부담)</u>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정 자본시장법 반영
제 3 부.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기준)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정보 갱신
제4부. 1. 라. 운용자산 규모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u>나이스채권평가</u> www.nicepricing.co.kr	<u>NICE P&I</u> www.nicepni.com	채권평가회사 사명 변경 반영
제 5 부. 1. 가. (2) ② 의결권 행사방법	<p>-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p> <p>-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p>	<p>-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 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p> <p>-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p>	개정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반영

	<p>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u>(추가)</u></p>	<p>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u>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 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u> 2. <u>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u> 3. <u>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u> 4. <u>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 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따를 것</u> 	
<p>제 5 부. 1. 가. (2) ③ 연기수익자총회</p>	<p>- 집합투자업자는 <u>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u>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p> <p>-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u>회의개시</u></p>	<p>- 집합투자업자는 <u>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u>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p>	<p>개정 자본시장 법 반영</p>

	<p><u>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u></p>	<p>-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u>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u></p>	
<p>제 5 부. 1. 가.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p>	<p>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u>(추가)</u></p>	<p>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p> <p>① <u>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u></p> <p>② <u>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u></p> <p>③ <u>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u></p> <p>④ <u>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p> <p>⑤ <u>투자신탁의 합병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제외)</u></p>	<p>자본시장법 규정 반영</p>
<p>제 5 부. 1. 가. (4) 반대매수청구권</p>	<p><u>법 제188조제2항각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u></p>	<p>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p> <p>① <u>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u></p>	<p>개정 자본시장법 반영</p>

	<u>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u>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제5부. 1. 라. 손해배상 책임	해당 증권의 <u>인수계약을 체결한 자</u> ,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u>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u>	해당 증권의 <u>인수인 또는 주선인</u> ,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u>매출인</u>	개정 자본시장법 반영
제 5 부. 3. 가.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u>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기재된 서류</u>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u>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u>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반영
제 5 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①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u> 으로 표시한 경우	①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u> 으로 표시한 경우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반영
제 5 부. 3. 나.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u>추가</u>)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u>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u>)	자본시장법 시행령 변경 반영
제 5 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u>및 그 사유</u>	개정 자본시장법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	---	--

정정 후 1)

집합투자기구 종류	최초설정일	가입자격
C	2005.06.30	가입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S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주1) 종류별 수수료 및 보수는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정 전 2)

구 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	매입시
환매수수료	90일 미만시, 이익금의 70%	환매시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해당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해당 범위 내에서 **선취**판매수수료를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합니다.

정정 후 2)

구 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Class S 수익증권 : 3년 미만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환매시
환매수수료	90일 미만시, 이익금의 70%	

주1) 선취판매수수료 **및 후취판매수수료**는 해당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해당 범위 내에서 판매수수료를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합니다.

프랭클린 친디아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문서전반	(추가)	Class S: AO882	CLASS S 신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를 반	개정 기업공시 서식 작성 기준 반영

	바랍니다.	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추가)</u>	<u>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u>	CLASS S 신설
제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u>(추가)</u>	<u>2014년 2월 21일:</u> <u>CLASS S 신설</u>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정보 갱신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u>(추가)</u>	나. 종류형 구조 <u>Class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u>	CLASS S 신설 & 모자형 구조도 업데이트
	다. 모자형 구조	다. 모자형 구조 *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11.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u>(추가)</u>	(2) 종류별 가입자격 <u>Class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u>	
제2부. 11. 나. (4) 환매수수료	[CLASS A 수익증권] 1. 30일 미만 : 이익금의 10% 2. 30일 이상 : 없음 [CLASS A 수익증권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 1.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2. 90일 이상 : 없음	[CLASS A, <u>CLASS S</u> 수익증권] 1. 30일 미만 : 이익금의 10% 2. 30일 이상 : 없음 [CLASS A, <u>CLASS S</u> 수익증권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 1.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2. 90일 이상 : 없음	CLASS S 신설

제2부. 13.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정정 전 1) 참조	정정 후 1) 참조	
제2부. 13.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자본시장법 반영
	(추가)	<u>Class S</u> <u>판매회사 보수: 0.25%</u>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u>금융비용 및</u>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u>발행분담금 총액 중 회계기간 초일부터 2013.8.28. 까지의 부분은 펀드가 부담하고, 2013.8.29. 이후 분은 자산운용사가 부담</u>)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중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제2항에 의하여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u>2013년 12월 31일까지</u> 발생한 과세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제2항에 의하여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u>2014년 12월 31일까지</u>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손익상계 연장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정보 갱신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제 5 부. 1. 가. (2) ② 의 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	개정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p><u>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u></p> <p>-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 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u>(추가)</u></p>	<p><u>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u></p> <p>-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 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u>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u></p> <p><u>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 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u></p> <p><u>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u></p> <p><u>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u></p> <p><u>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 보호와</u></p>	반영
--	--	--	----

		<p><u>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따를 것</u></p>	
<p>제 5 부. 1. 가. (2) ③ 연 기수익자총회</p>	<p>- <u>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u>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p> <p>- <u>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u></p>	<p>- <u>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u>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p> <p>- <u>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u></p>	<p>개정 자본시장 법 반영</p>
<p>제 5 부. 1. 가. (3) 투자 자총회 결의사항</p>	<p>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u>(추가)</u></p>	<p>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p> <p>① <u>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u></p> <p>② <u>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u></p> <p>③ <u>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u></p>	<p>자본시장법 규 정 반영</p>

		<p>④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⑤ 투자신탁의 합병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제외)</p>	
제 5 부. 1. 가. (4) 반대매수청구권	<p>법 제188조제2항각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p>	<p>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p> <p>①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p> <p>②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p>	개정 자본시장법 반영
제5부. 1. 라. 손해배상책임	<p>해당 증권의 <u>인수계약을 체결한 자</u>,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u>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u></p>	<p>해당 증권의 <u>인수인 또는 주선인</u>,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u>매출인</u></p>	개정 자본시장법 반영
제 5 부. 3. 가.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p>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u>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기재된 서류</u></p>	<p>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u>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u></p>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반영

제 5 부. 3. 가. (2) 자산 운용보고서	①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u> 으로 표시한 경우	①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 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 전 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u> 으로 표시한 경우	개정 자본시장 법 시행령 반영
제 5 부. 3. 나. (1) 신탁 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u>추가</u>)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u>투자신 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 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u>)	자본시장법 시 행령 변경 반영
제 5 부. 3. 나. (3) 집합 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 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 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 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 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 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 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 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 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 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 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 체적인 행사내용 <u>및 그 사유</u>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 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 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u>및 그 사유</u>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 인 사유 	개정 자본시장 법 반영

정정 전 1)

구 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Class A 수익증권 : 1.00% 이내	매입시
환매수수료	[CLASS A 수익증권] 1. 30일 미만 : 이익금의 10% 2. 30일 이상 : 없음 [CLASS A 수익증권을 제외한 다른 수익증권] 1.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2. 90일 이상 : 없음	환매시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해당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해당 범위 내에서 선취판매수수료를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합니다.

정정 후 1)

구 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Class A 수익증권 : <u>납입금액의</u> 1.00% 이내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Class S 수익증권 : 3년 미만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환매시
환매수수료	[CLASS A, CLASS S 수익증권] 1. 30일 미만 : 이익금의 10% 2. 30일 이상 : 없음 [CLASS A, CLASS S 수익증권을 제외한 다른 수익증권] 1.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2. 90일 이상 : 없음	

주1) 선취판매수수료 및 후취판매수수료는 해당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해당 범위 내에서 판매수수료를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합니다.

프랭클린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 1호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4년 2월 14일: 종류형 펀드로 구조 변경 * 효력발생일부터 기존 가입자는 템플턴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Class C 수익증권의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2014년 2월 14일: 종류형 펀드로 구조 변경 * 효력발생일부터 기존 가입자는 프랭클린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 1호 Class C 수익증권의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기재오류 정정

3. 효력 발생일

2014년 2월 21일

자세한 내용은 변경된 투자설명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